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06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지원 추가(안 제4조 제2항제7호 신설)	2
2.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	7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추가 (안 제16조의4제5호 신설)	14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나. 제 출 일 : 2026. 1. 8.

다. 회부연월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서점의 감소에 따라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편집·인쇄·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의3 및 제16조의4제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지원 추가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개정안은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지역출판의 육성·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지역출판의 육성·지원
7. ~ 9. (생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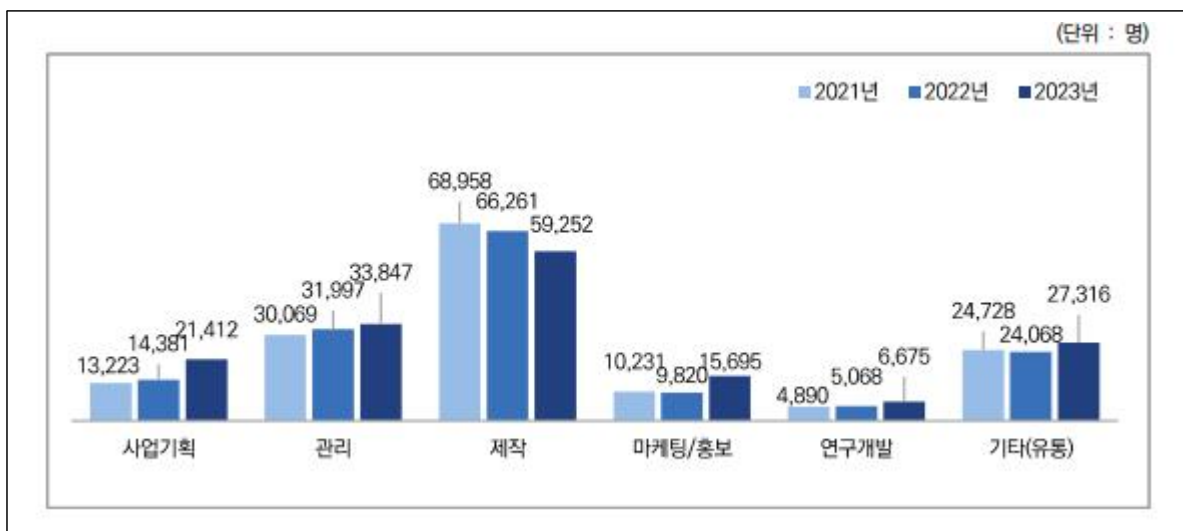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 지역은 2015년 3곳에서 2025년 55곳으로 증가하였고, 지방소멸위험에서 안전한 지역은 2015년 88곳에서 2025년 5곳으로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¹⁾.

1)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가을호, 한국고용정보원, p.112

이러한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지역출판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문화와 지역의 유·무형 콘텐츠를 보존할 수 있는 아카이빙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달리 자동화가 어렵고 기획, 편집, 디자인 등 고급 인력 서비스가 필수적인 ‘인적 자원 집약형’ 산업이면서, 타 산업 대비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아 제조업 등 남성 중심의 일자리 위주의 지역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출판산업 직무별 업종별 종사자 현황(2023년) >



※ 출처: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 출판산업 성별 업종별 종사자 현황(2023년) >

(단위 : 명)

업종	성	남자	여자	합계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종이매체출판업)	14,495	15,081	29,576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7,804	10,105	17,909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 제작업 ^{10B)}	1,706	1,900	3,606
	신문 발행업	17,454	8,669	26,123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7,861	6,031	13,892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2,093	1,800	3,893
	기타 인쇄물 출판업	2,468	1,769	4,237
	소계	53,881	45,356	99,237
인쇄업	인쇄업	10,598	6,771	17,370
출판 도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8,084	7,143	15,227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13,991	16,368	30,358
	소계	22,075	23,510	45,585
온라인 출판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615	641	1,257
출판 임대업	서적 임대업(만화제외)	391	358	749
합계		87,560	76,637	164,197
비중(%)		53.3	46.7	100.0

※ 출처: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그러나,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대비 2023년도 출판업 사업체는 13,165개에서 15,749개로 19.6%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출판 사업체는 2023년도 기준 4,043개로 전체 출판업 사업체의 25.7%에 불과하다는 점²⁾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서점이 감소하고 있어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며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편집·인쇄·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p.91

< 출판산업 지역별·연도별 사업체 수 현황 >

(단위 : 개)

지역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	연평균 증감률 (%)
7개 시	서울	13,959	14,074	12,582	38.8	△10.6	△5.1
	부산	1,493	1,526	1,339	4.1	△12.3	△5.3
	대구	1,359	1,371	1,263	3.9	△7.9	△3.6
	인천	1,070	1,105	1,067	3.3	△3.4	△0.1
	광주	769	787	955	2.9	21.3	11.4
	대전	1,027	1,043	935	2.9	△10.4	△4.6
	울산	367	369	651	2.0	76.4	33.2
	세종	224	237	200	0.6	△15.6	△5.5
	소계	6,309	6,438	6,409	19.7	△0.5	0.8
9개 도	경기도	7,519	7,812	6,074	18.7	△22.2	△10.1
	강원도	578	597	948	2.9	58.8	28.1
	충청북도	657	670	607	1.9	△9.4	△3.9
	충청남도	806	827	809	2.5	△2.2	0.2
	전라북도	863	872	1,017	3.1	16.6	8.6
	전라남도	668	673	1,111	3.4	65.1	29.0
	경상북도	1,040	1,060	1,198	3.7	13.0	7.3
	경상남도	1,239	1,248	1,175	3.6	△5.8	△2.6
	제주도	373	381	526	1.6	38.1	18.8
	소계	13,743	14,140	13,465	41.5	△4.8	△1.0
합계		34,011	34,652	32,457	100.0	△6.3	△2.3

※ 출처: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이에 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³⁾에 “지역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나, 현행법 제7조의2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여금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적 소매업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 제4조제2항에서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출판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출판 역시 이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현재 출판문화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역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목적을 포함한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2.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개정안은 “지역출판”의 요건을 법률에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출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3(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판(이하 “지역출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출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도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

현행	개정안
	<u>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④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출판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u> ⑤ <u>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출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개정안은 지역출판의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출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 추진시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7조의2⁵⁾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u>지역서점</u>”이라 한다)이 <u>활성화</u>될 수 있도록 <u>정책을 수립</u>하고 이에 <u>필요한 지원</u>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u>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u>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u>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제7조의3(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판(이하 “<u>지역출판</u>”이라 한다)이 <u>활성화</u>될 수 있도록 <u>정책을 수립</u>하고 이에 <u>필요한 지원</u>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출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도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u>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u>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u>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u>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u>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u>지역출판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도록 독려</u>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출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호는 지역출판의 요건 중 하나로 관할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신고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지역출판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개정안의 문언을 엄격하게 살펴보면, “시장”을 지역출판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지역출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6)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므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출판업자도 지역출판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수도권 중심의 출판산업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출판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출판 대상 지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첫째, 안 제7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른 “지역출판”이 현행법에 따른 “출판사”와 사실상 동일하여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고, 현행법 제9조7)에서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의3제1항제1호의 지역출판 요건과 동일하며,

출판사로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필수인바, 사업자등록을 지역출판의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크지 않고, 출판사업체의 96.9%가 매출액 100억원 미만⁸⁾으로 대부분 중

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8) 「2024 출판산업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108

소기업에 해당하여 정책 대상의 실질적 범위를 특정하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입장임.

둘째, 안 제7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지역별 출판 현황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역출판에 한정하여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사 중복 및 행정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셋째, 안 제7조의3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4조제4항⁹⁾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진흥계획은 출판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역출판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임.

넷째, 안 제7조의3제4항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7조의2제5항¹⁰⁾에서 이

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1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섯째, 안 제7조의3제5항에 관해서는 지역출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이미 가능한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입법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추가 (안 제16조의4제5호 신설)

개정안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도서, 지역출판 및 지역출판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0. (생략)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u>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도서, 지역출판 및 지역출판사 활성화 지원</u> 6. ~ 11. (현행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함)은 현행법 제16조¹¹⁾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제16조의4¹²⁾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1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1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 제16조의4제5호는 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의3의 개정
에 맞춰 진흥원의 직무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도서, 지역
출판 및 지역출판사 활성화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진흥원이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 제16조의4에서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기획,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시설의 설치 등 출판문화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직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출판 역시 이에 포함된다는 점과 개정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출판”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개
념을 전제로 지역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의 직무로 명시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업무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 의 처
02)6788-5380